

2023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 운영계획

공적지원으로 위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1. 지역사회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
- 4. 민·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

2 사업목적

- ☐ 복지사각지대 주민이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위기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감소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 사업비 : 금86,156,549원(금팔천육백일십오만육천오백사십구원)

- ☐ 사업기간 : 2023. 5. ~ 8. (4개월)

- ☐ 사업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 신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중장년 1인가구,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자립준비청년 등)

※기존 공적부조 우선 지원 안내하며, 공적부조로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선발

□ 사업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긴급생계비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 곤란에 따른 생계유지비	가구규모 별 상이	
의료비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	최대 100만원	
체납비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 체납비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비	주거비(보증금, 월세 등), 이사비, 특별주거비	최대 100만원	
주거환경개선비	보일러 수리/교체, 도배·장판 교체, 쿨루프 도색, 단열 등	최대 100만원	
기타지원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0만원	

※대상자 위기정도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4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절차



※ 구비서류 미비, 내용 부실, 긴급 상황의 타당도가 적합하지 않은 신청 건은 반려될 수 있음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10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 혼합가구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함

※ 1인가구는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참고하여 적용

지원내용	구분	내용					
긴급생계비	신청기간	사업기간(2023.5.~ 8.) 내 수시					
	지원자격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수급자 포함) ※ 위기가정 추천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상담으로 대상자 가구 발굴					
	지원내용	가구 규모에 따라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금액	가구당 1회 지원 - 지원규모 : 2023년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금액(원)	311,680	518,420	665,220	810,140	949,600
	※ 긴급복지제도와 특별생계보호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지원방법	대상자에게 직접 계좌 입금 ※ 불가능할 경우 동주민센터 전용 계좌를 통해 현금 지급(현금수령확인증 사후 제출)						
의료비	신청기간	사업기간(2023.5.~ 8.) 내 실질적인 의료비 발생 시 신청 ※사후 신청 시 발생 1주일 이내					
	지원자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가구 - 민간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무료수술 대상자이나 사전 검사가 꼭 필요한 자 또는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 사전검사가 꼭 필요한 자 - 보건복지연계 목적으로 방문간호사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 등 ※ 지원제외 대상 민영보험 가입으로 직접 보장을 받는자, 치과치료비, 간병비, 성형목적의 진료비, 건강검진검사비, 요양병원의료비,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시력교정비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급여와 비급여로 발생한 의료비)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긴급복지제도, 보건소 지원사업 등 타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비를 모두 사용하고도 의료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추가지원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지원방법	대상자에게 직접 계좌 입금 ※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비용 대납					
체납비	신청기간	사업기간(2023.5.~ 8.) 내 수시					
	지원자격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되어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의료보험 중지 또는 중지될 위험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공공요금 체납비(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 지원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 ※신청 전 타 지원사업 신청(지원) 여부 선확인					
	지원방법	- 전기, 수도, 가스 : 해당 공급업체에 체납 비용 대납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공단에 체납 비용 대납					

지원내용	구분	내용
주거지원비	신청기간	사업기간(2023.5.~ 8.) 내 실질적인 사유 발생 시 신청 ※ 사후 신청 시 발생 1개월 이내
	지원내용 및 금액	1) 주거비(보증금, 월세 등) : 최대 100만원 - 위기가정으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세대 - 3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하여 퇴거 조치 위험이 있는 세대 등 2) 이사비 : 최대 50만원 ※이사 전 신청 원칙 - 이사비 지원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수급자, 차상위 포함) ※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비, 이사비 중복지원 가능 3) 특별주거비 : 최대 100만원 -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중 임대주택 입주자로 생활용품 구입 등 ※ 주거비, 이사비와 중복지원 가능하나 징검다리주택 사업 내 주거안정자금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방법	대상자에게 직접 계좌 입금 ※ 월세 체납의 경우 집주인 계좌로 대납 후 영수증 수령 ※ 업체 입금시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사전 제출
주거환경 개선지원비	신청기간	사업기간(2023.5.~ 8.) 내 수시
	지원자격	- 보일러가 낙후되어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가구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배·장판 교체, 쿨루프 도색, 단열 등 수리가 필요한 가구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동거 중이며 주거지 내부 환경 개선 (싱크대 개보수, 점·소등 리모컨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지원, 핸드레일 설치, LED 전구교체, 기타)이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안에 따른 실비 지급)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방법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원 ※부득이한 경우 신청 가구에 계좌 입금 후 영수증 확인
기타지원	신청기간	사업기간(2023.5.~ 8.) 내 수시
	지원자격	위 명시된 지원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방법	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

6

신청방법

☐ 신청방법: 공문신청(문서유통시스템 또는 이메일 mapowf@naver.com)

☐ 제출서류

구분1	구분2	신청서류	비고
공통 필수	기본 필수	① 공문[붙임1] ② 지원 대상자 추천 내역서[붙임2] ③ 생활실태 조사서[붙임3]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4] ⑤ 확약서[붙임5]	
	소득·재산 증빙자료	① (국민기초생활 및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② (일반 저소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사후제출	① 지원 대상자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서[붙임6](지원일로부터 3개월 후 제출) ② 현금수령확인증(해당자)[붙임7]	
해당자 필수	긴급생계비	① 개인 통장 사본	
	의료비	① 진단서(소견서) ② 진료비 내역서 및 의료비 영수증 - 사전신청 : 신청일 현재 진료비 내역서 - 사후신청 : 의료비 영수증 ③ 의료기관 통장 사본 ④ (필요한 경우) 개인 통장 사본	
	체납비	① 체납고지서(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주거지원비	① 임대차계약서 ② (월세 체납) 주거비 체납확인서(집주인 확인)[붙임8] ③ (이사) 이사비용 영수증 ④ (이사 관련 지출) 구입 영수증 ⑤ 개인 통장사본 ⑥ (업체 입금시)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주거환경 개선지원비	① 관련 비용 견적서 ② 서비스공급자 지출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기타지원	① 지출 관련 증빙서류(재단, 모금회 지출 규정 준용)	

□ 신청시 유의사항

1. 공적 지원 우선 활용

- 긴급복지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우선 활용** 후 신청해야 하며 기지원 건은 생활실태조사서에 기재

2. 긴급성, 위급성 적합 여부 판단

- 본 사업을 통한 지원에 있어 신청 사유의 긴급성과 위급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

3. 대상자 가구의 자구 노력 여부 확인

- 대상자가 현재 처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 여부 확인 후 가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4. 지원 신청 전 기지원 이력 선확인

- **2022, 2023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5.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재단으로 신청 불가

- 마포복지재단의 역할은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금하고 적정한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하는 것임
- 이에 따라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재단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관련부서, 복지기관을 통해 공문으로 신청해야 함

6.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일로부터 3개월 후 **대상자 지원금 활용 및 현재 상황, 위기상황 극복 여부 확인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8

지원방법

□ 지원방법 : 현금지원 원칙

-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원 보다 현물지원의 효과성이 고려될 경우 현물 서비스 지원도 가능하나 가급적 지양함
- 신용불량자 혹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 명의 또는 신청기관의 계좌로 입금 조치하되, 신청기관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금수령확인증 제출

□ 지원중지, 반납, 회수

- 최종 지원액과 실제 발생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 지정계좌로 **반납**함이 원칙임 (예시)의료비로 2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실제로는 180만원만 발생한 경우 20만원 반납

-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대상자의 소득이 현저히 증가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지원중지를 원칙으로 함
- 지원결정 후 **별도의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획(치료, 수리 이사 등)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결정이 중지**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만료 및 예산 소진으로 인한 경우에도 지원결정에 대하여 취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일사안으로 이중 지원**받은 것이 확실한 경우,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경우 등 신청 당시 담당 기관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원이 된 경우 과·오지급된 **금액을 반납**해야 함
- 잔액발생 시 반납방법 : 반납계좌로 입금후, 반납신청서[붙임9] 작성하여 입금증 등 이체 확인내역과 함께 마포복지재단으로 공문 제출

☐ **지원 결정 통보: 마포복지재단 → 신청기관(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 신청인**

☐ **기타사항**

- 이외 특이사항의 경우 재단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 후 진행

9

행정사항

☐ **업무분장을 통한 사업추진**

구분	역할	
마포구	- 대상자 추천 및 모니터링 - 지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마포복지재단	복지사업팀	- 사업기획 및 총괄 - 대상자 신청서류 검토 및 예산 지원 - 보도자료 배포 - 재단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 홍보
	운영지원팀	- 예산 집행처리 -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및 관리

붙임 「씨젠의료재단 지정기탁-2023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 서류 양식 일체. 끝.